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4. 10. 16.(수)

자료문의 : 과학수사부

전화번호 : 02-535-9484

주책입자 : 법과학분석과장

제 목

## 2024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5건을 2024년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① **[서울중앙지검]**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4~5년의 개발시간이 필요한 D램 공정기술을 중국법인으로 불법 유출하여 불과 1년 6개월만에 D램 시범 웨이퍼를 생산한 전 삼성전자 상무 등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하였습니다.

중국 법인이 불법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D램을 최종 양산할 경우 그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고인들을 구속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이 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② **[대구지검 김천지청]** 국과수 감정결과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강제추행' 혐의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대검 DNA·화학분석과 DNA 재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의류에 피의자의 DNA가 존재함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철저히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여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변경한 후 기소함으로써 피해자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③ **[의정부지검]** SNS 어플리케이션 프로필에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촬영물을 게시한 송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죄를 추가 발견하고, 피의자 휴대전화를 압수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 B의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추가 범행을 자백하여 은닉된 음란물 유포 범죄를 모두 밝혀냈습니다.

④ **[부산지검]** 경찰이 기존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할 수 없는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단서로 수사개시한 사안을 발견하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관할 지역 경찰에 디지털 증거 압수 관련 유의사항을 전파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⑤ **[수원지검]**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이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유출한 사건에서 산업기술 수사자문관의 자문 등을 통해 피의자가 유출한 기술의 영업비밀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통해 관련 중국 업체의 매출이 8배 급증하고 중국의 OLED 기술 역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는 점 등 국내 OLED 산업에 끼친 악영향을 정밀 분석하여 피의자의 죄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구속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국외 체류로 장기간 수사가 중단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끈기 있게 수사하여 악의적인 기술유출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 상세 선정사유는 '붙임' 참조

▣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붙임: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내역(상세)

| 순<br>번 | 소 속                    | 우수 수사사례  |
|--------|------------------------|--|
|        | 부 장                    |  |
|        | 주임검사                   |  |
| 1      | 중앙지검<br>정보·기술<br>범죄수사부 |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1위의 삼성전자 <b>D램 기술을 유출해 중국에서 2번째로 시범 웨이퍼 생산을 성공</b>하였고, 양산 성공시 예상 피해액이 수십조원에 달할 뻔했던 기술유출 사건에서 사경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술을 유출한 <b>前 삼성전자 상무 및 연구원 2명을 구속 기소하여 최종 양산을 방지</b>한 사례</li> </ul>  |
|        | 안동건<br>(35기)           | <p><b>공소사실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삼성전자의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인 D램 기술을 유출, 부정사용하여 중국 법인 X社 및 Y社에서 해당 D램을 개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li> <li>○ 피고인 B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인 D램 기술을 유출 [업무상배임]</li> </ul>  |
|        | 박성현<br>(변3회)           |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건은 피고인 B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경찰이 합동하여 10,000쪽 가량의 기록 사본을 받아 범죄사실 구성 및 수사방향 등을 함께 재검토하여 피고인 2명을 구속기소</li> <li>○ 피고인들은 삼성전자가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한 국가핵심 기술을 불법유출·사용하여 <b>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통상 4~5년씩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 6월 만에 개발하여 D램 시범 웨이퍼 생산까지 성공</b>한 것임</li> <li>○ 중국기업이 D램 최종 양산에 성공할 경우 국가적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b>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b>하였음</li> </ul> |

| 순<br>번 | 소 속          | 우수 수사사례   |
|--------|--------------|---|
|        | 부 장          |   |
|        | 주임검사         |   |
| 2      | 김천지청<br>형사2부 |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자가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국과수의 피의자 DNA 미검출 감정결과로 인해 강제추행으로만 송치된 사건에서, <b>대검 DNA 재감정을 통해 피의자 변소와 모순되는 증거 (피해자 반바지에서 피의자 DNA 검출)를 확보</b>하고 이를 토대로 <b>피의자 자백을 받아 유사강간으로 기소</b>한 사례</li> </ul> <p><b>공소사실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던 피해자를 냉장고 앞으로 밀치고 몸을 밀착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유사강간 [유사강간]</li> <li>※ 사경 송치 범죄사실 :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강제추행]</li> </ul> |
|        | 정미란<br>(37기) |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가 유사강간(손가락 삽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장난삼아 피해자 배를 만졌을 뿐이라고 부인 - 경찰은 피해자 착용 의류(반바지) 등을 국과수에 감정의뢰 하였으나 감정 결과 피의자의 DNA 미검출되어 사경은 강제추행 혐의로만 송치</li> </ul>  |
|        | 강상혁<br>(변9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피해자가 입었던 의류(반바지)를 송치하도록 지휘한 후 대검에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하여 <b>위 반바지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b>받음</li> <li>○ 위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추궁한 결과 <b>피의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 일체를 자백</b>받아 <b>죄명을 강제추행에서 유사강간으로 변경</b>한 후 기소한 사례</li> <li>※ 강제추행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li> <li>※ 유사강간 법정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li> </ul>   |

| 순<br>번 | 소 속           | 우수 수사사례   |
|--------|---------------|---|
|        | 부 장           |   |
|        | 주임검사          |   |
| 3      | 의정부지검<br>형사3부 |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 촬영물을 촬영하여 '○○'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사안에서, 피의자가 <b>다른 피해자와 성명불상 여성의 노출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게시한 것을 확인</b>하고 피의자의 <b>휴대전화를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b>하여 피의자의 동종범죄를 추가로 밝혀 기소한 사례</li> </ul> <p><b>공소사실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A의 허리, 둔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 어플리케이션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li> <li>○ '○○'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B를 지칭하여 모욕적인 닉네임으로 프로필을 설정하고, 피해자 B의 사진 및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같이 게시하여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li> </ul> |
|        | 오미경<br>(35기)  |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A에 대한 사건 수사 중 '○○' 어플리케이션 회신 자료에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발견한 후 <b>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휴대전화를 포렌식함</b></li> </ul> <p>- 그 결과 <b>피해자 B의 사진 및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 및 상반신 노출 사진</b> 등도 발견되었음</p>  |
|        | 민애리<br>(변10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자를 추궁한 결과 피의자가 학교동창인 피해자 B의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함께 게시하고 프로필 닉네임을 모욕적인 문구로 설정한 사실 확인</li> <li>○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한 꼼꼼한 법리검토를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 이용 노출 사진을 추가 확인 후 피의자의 동종범죄 혐의를 밝혀 기소</li> </ul>  |

| 순<br>번 | 소 속                 | 우수 수사사례  |
|--------|---------------------|--|
|        | 부 장                 |  |
|        | 주임검사                |  |
| 4      | 부산지검<br>강력범죄<br>조사부 | <p><b>사안 개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기존에 압수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폐기하지 않고 업무용 PC에 보관하던 중 이를 단서로 수사개시한 사안을 발견하여 경찰에 <u>시정조치를 요구</u>하고 부산 지역 경찰 수사부서에 디지털 증거관련 유의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 사례</li> </ul>  |
|        | 윤국권<br>(37기)        | <p><b>피의사실 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의자 A는 피의자 B로부터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li> <li>○ 피의자 B는 피의자 A에게 필로폰 매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li> </ul> <p><b>선정 사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하지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업무용 PC에 장기관 보관하던 중 약 7개월 경과 후 본건 피의사실 수사를 개시</li> <li>○ 대법원은 영장 기재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은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br/>※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모1586 결정 등</li> </ul> |
|        | 김병준<br>(변7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u>시정조치를 요구한 결과 다수의 유사사례를 발견</u><br/>-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u>디지털증거 관련 유의사항이 부산지역 경찰 수사부서에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u><br/>※ 위 범행은 위법성이 단절되는 증거(계좌내역 등) 수집토록 보완수사요구</li> </ul>  |

| 순<br>번 | 소 속                            | 우수 수사사례   |
|--------|--------------------------------|---|
|        | 부 장                            |   |
|        | 주임검사                           |   |
| 5      | 수원지검<br>방위사업·<br>산업기술범죄<br>수사부 | <p><b>사안 개요</b></p> <p>○ 전 삼성전자 연구원의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 기술 유출 사건에서 <u>산업기술 수사자문관의 자문 등을 통해 OLED 기술의 영업비밀성을 명확히 입증</u>하는 한편, 피의자의 범행으로 인한 <u>중국 OLED 기술의 발전 정도를 정밀 분석</u>하여 피의자를 구속 기소한 사례</p> <p><b>공소사실 요지</b></p> <p>○ 삼성디스플레이 OLED 연구원은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 공정정보를 부정취득한 후 이를 중국 경쟁업체에 누출·부정사용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p> |
|        | 박경택<br>(36기)                   | <p><b>선정 사유</b></p> <p>○ 경찰은 자신이 취득한 OLED 관련 기술은 이미 공지된 기술 이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여 일부 혐의없음 의견 송치</p> <p>○ 이에 검찰은 <u>고의 관련 추가 조사, 법리 검토 및 산업기술 수사자문관의 자문 등을 통해 유출된 OLED 기술자료가 영업 비밀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u></p>  |
|        | 안덕중<br>(47기)                   | <p>○ 본건은 피의자의 국외 체류라는 악조건에서도 약 5년이라는 끈기있는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유출한 영업비밀의 중대성과 피의자 이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부각함으로써 피의자를 구속하여 <u>기술 유출 사범은 결국 엄중 처벌</u>됨을 널리 알림</p>   |